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6. 25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6월 5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9. 6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장종연)

가. 제안이유

-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』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,
- 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시(2019.4.23.)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협의회명 :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

○ 협의회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 근거 신설(규약 제13·14조)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‘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,
-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명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정옥)

- 본 건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협의회 규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 예산에 편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,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규정하였음.
- 따라서,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예산 편입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11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6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근거

지방자치법 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

2. 제안사유

-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』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,
- 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시(2019.4.23.)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협의회명 :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
- 협의회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 근거 신설(규약 제13·14조)
 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‘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,
 -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명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52조 ~ 15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**회장이**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”를 “**회장단체에** 납부하고”로 한다.

제14조를 제1항, 2항으로 구분하고,

제14조 “**협의회의 회계는** 간사가 관리하며”를 제14조 제1항에 “**협의회 운영** 경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에 “**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은**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”를 신설한다.

〈신 · 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회비 및 분담금 등) ② 일반회비는 연360만원으로 하며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, 협의회 운영등의 경비에 사용한다. 제14조(회계관리) 협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리하며 매년1회 정기회의에서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. <u><신 설></u>	제13조(회비 및 분담금 등) ② ----- <u>회장단체에 납부하고,</u> ----- ----- 제14조(회계관리) ① <u>협회의 운영경비는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</u> ----- ----- ② <u>회장단체 변경 시,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은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.</u>

제 1 장 >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본 회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(이하 「협의회」 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회원의 자격)

- ① 회원은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 한다. 단,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(개정 2016. 6. 10.)
- ② 추가 회원은 협의회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.
- ③ 회원 탈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협의회 승인에 의한다.
- ④ 협의회는 참여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구성하고, 장 또는 부단체장을 협의회 위원이라 한다.(개정 2016. 6. 10.)

제 4 조 (사무소의 위치 등)

- ①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.
- ②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·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·관리 한다.

제 2 장 > 임원 및 운영

제 5 조 (임원의 구성 등)

- ①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.
-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 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7 조 (임무)

-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, 회원 상호 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.(개정 2016. 6. 10.)

제 3 장 > 회의 등

제 8 조 (회의)

협의회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며, 개최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① 정기회의 : 연 2회 이하
- ② 임시회의 : 회의소집 안건을 감안 회장단이 소집

제 9 조 (개회 및 의결방법)

협회의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사업 등)

협의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.

- ①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
- ②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
- ③ 다문화 관련된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
- ④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
- ⑤ 기타 협의회회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 11 조 (사무처리)

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회장이 속한 시·구의 업무담당 실·과·소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실무협의회 운영 등)

-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 한다.
-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·과·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실·과·소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.
-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⑤ 협의회 간사는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제 4 장 > 재정

제 13 조 (회비 및 분담금 등)

- ① 협의회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한다.
- ② 일반회비는 연 360만원으로 하며 **회장단체에 납부하고**, 협의회 운영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.(개정 2015. 6. 5.)
- ③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·자문 및 그 밖의 특별한 사항의 경우 지출한다.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분담하며,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.

제 14 조 (회계관리)

- ① **협의회 운영 경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** 매년 1회 정기 회의에서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.

②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은 지자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개정)

본 회칙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 3 조 (별도규정)

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4 조 (협의회 최초 구성시 가입한 회원)

이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최초 가입 회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성동구 · 서대문구 · 강서구 · 구로구, 인천광역시 남동구, 광주광역시 광산구, 경기도 수원시 · 성남시 · 안양시 · 부천시 · 평택시 · 안산시 · 고양시 · 남양주시 · 시흥시 · 용인시 · 김포시 · 화성시 · 광주시 · 포천시, 충청남도 천안시 · 아산시, 경상남도 김해시 이다.

제 5 조 (회비특례)

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창립년도의 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.

부 칙 (2015. 6. 5.)
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 6. 10.)
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전 국 다 문 화 도 시 협 의 회 〉

1. **구성목적** :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공동해결을 통한 내·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사회와 공동의 미래 조성
2. **구성일시** : 2012. 11. 7.(창립총회) ※ 영등포구 2017년 가입
3. **회원자격** :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인 참여희망 기초자치단체
4. **회 원 수** : 26개 자치단체(회장 구로구청장)

(2019. 5월 기준)

지 역	지방자치단체명	비 고
서울(7)	종로구, 성동구, 서대문구, 강서구, 구로구, 영등포구, 금천구	
경기(14)	수원시, 성남시, 부천시, 안양시, 평택시, 안산시, 고양시, 남양주시, 시흥시, 용인시, 김포시, 화성시, 광주시, 포천시	
인천(1)	남동구	
광주(1)	광산구	
충남(2)	천안시, 아산시	
경남(1)	김해시	
합계	총 26개 지자체 (서울 : 7개, 타시구 : 19개)	